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212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지슬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0. 5.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0. 5. 접수 제421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2020. 9. 22.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대출만료일을 2021. 9. 22.로 하여 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출만료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1. 10. 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은행은 2022. 3. 10.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0. 5.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 2021개회6656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2. 5. 1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9. 28. A은행의 위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마. 원고가 2022. 7. 6.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고,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에 계속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적법한 수계 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은행이 2022. 3. 10.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2. 5. 17.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